

##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11

(제124회 화순군의회의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종합민원과장 허길중

나. 제안사유

- 최근 주민등록관련 사고로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안심 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민등록담당공무원(대직자 포함)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
-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·공제의 가입조항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함과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
- 주민등록법의 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### 7. 붙임 :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##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"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"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